

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5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0. 2. 10.

발의자 : 주기명 의원외 6인

□ 개정이유

- 현수막(지정계시대 포함)의 표시방법 및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관리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, 특정구역에서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현수막의 표시방법 중 현수막(지정계시대 포함)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
-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탁업무에 효율성을 기함(안 제28조).
-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우수광고업자 인센티브 방안 및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 작업장등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(안 제37조).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

○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한다.

제28조 제2항 중 “2년”을 “5년”으로, “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”를 “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”으로 한다.

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(광고물등의 정비 지원) ①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에서 광고물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, 광고주, 옥외광고업자 등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광고물등의 설치·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보조금관관리조례」 및 「안산시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

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959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0. 02. 26.
제안자 : 도시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현수막(지정계시대 포함)의 표시방법에 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,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투명한 위탁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기간을 3년 이내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현수막(지정계시대 포함)의 표시방법 중 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5조)
-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관리 기간을 3년 이내로 함(안 제28조)

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제15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현수막(지정게시대 포함)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
된다.

제28조 제2항 중 “5년 이내로 하되,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
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”를 “3년 이내로 한다”로 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5조(현수막의 표시방법)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, 지정계시대이용,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,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28조(현수막지정계시대의 위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계시시설 관리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5조(현수막의 표시방법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4. (원안과 같음)</p> <p>5. 현수막(지정계시대 포함)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② ~ ④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28조(현수막지정계시대의 위탁 등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3년 이내로 한다.</p> <p>③ (원안과 같음)</p>